

서울고등법원

제 1 4 -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김영민, 안상현, 조건주, 하선헌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합자회사 2. C 합자회사
피고,피항소인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희, 김병찬, 김수형, 박봄빛누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가합563146 판결
변론종결	2022. 9. 1.
판결선고	2022. 10.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합자회사, 피고 C 합자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합자회사, 피고 C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 합자회사, 피고 C 합자회사: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 1행부터 제11면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8행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 D는 2017. 11. 27. 잠정적 매매대금을 1,800억 원으로 정하여 전자부품사업부 및 UC 사업부(이하 '분할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 중 '매도인'은 원고를, '매수인'은 피고 D를 가리킨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D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하여 분할대상사업의 회계, 세무, 법률, 영업 등 전반에 걸쳐 실사를 시작하였다.

제3조 매매대금

1. 본건 거래를 위한 잠정적 매매대금은 금 천팔백억 원(₩180,000,000,000)(이하 '잠정 매매대금')으로 한다. 잠정 매매대금은 제4조에 따른 실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4조 실사

2. 본실사 및 잠정 매매대금의 조정 및 확정

가. 본 양해각서 체결일 이후 매수인은 즉시 실사요청자료목록을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발송하고, 매도인이 이에 대한 실사자료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4주간의 기간 동안 매수인은 신설회사(본건 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사업을 의미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대한 본실사를 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2주간의 기간 내에서 실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매수인은 본실사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실사 내용에 따라 잠정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수인은 위 기간 내에 조정사유의 상세내역과 조정요청 금액을 기재한 조정요청서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첨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잠정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조정요청서 제공일로부터 2주 내에 잠정 매매대금의 조정 금액을 확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제10조 양해각서의 효력 및 해제

3.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대규모 노사분규 등으로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영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본 호에서 중대한 부정적 변화라 함은 해당 사유로 인한 신설회사의 순자산감소액이 잠정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매수인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가. 본실사의 결과 [별첨1]에 따른 조정 금액이 잠정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나. 2017. 1. 1. 이후 분할대상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생기는 경우. 본 호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란, 분할대상사업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 또는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건, 사유 또는 사정과 종합하여, 분할대상사업의 가치를 잠정 매매대금의 10% 이상으로 감소시키는, 또는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개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은 제외한다. [별첨1] 잠정 매매대금 조정의 방법 및 한도 3. 조정대상 및 한도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잠정 매매대금을 조정한다. 가. 매수인이 본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제공받은 자료로부터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로서 분할대상사업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 사유에 따른 잠정 매매대금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한도를 둔다. 가. 조정 금액이 잠정 매매대금의 3%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나. 조정 금액이 잠정 매매대금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에 한하여 잠정 매매대금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조정 금액의 합계액이 잠정 매매대금의 8%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잠정 매매대금에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 금액 산정에 있어, 분할대상사업에 가치평가에 사용한 배수(multiple) 등을 곱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제7면 1행 내지 2행의 '전자부품사업부와 UC 사업부(이하 '분할대상사업부'라 한다)'를 '분할대상사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2017. 6. 30. 기준 멀티플 배수 5.44를 적용한 전자부품사업부의 LTM EBITDA<각주1>(이하 '차감 전 순이익'이라 한다)는 1,615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8. 6. 22. 피고에게 새로이 제시한 중기목표에 의하면, 전자부품사업부의

차감 전 순이익(멀티플배수 5.44 적용)은 2018년 653억 원<각주2>(59.6% 감소), 2019년 845억 원<각주3>(47.6% 감소)으로 각 평가되었으므로,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의 가치하락이 이미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가치하락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 합자회사들은 2018. 7.경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더 이상 계약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해제사유(계약상 의무사항의 중요한 위반 등)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2018. 7. 25. 그 의사표시가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합자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이하 '원고의 2018. 7. 25.자 계약해제'라 한다). 따라서 피고 합자회사들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최종매매대금의 10%인 188억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피고 합자회사들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 제2항), 피고 합자회사들과 공동하여 188억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해제주장<각주4>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이 확인된 경우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4항 본문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정적 사건, 사유 또는 사정과 종합하여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회사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는 또는 그와 같이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MAE<각주5> 해제조항',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의 해제사유를 '이 사건

MAE 해제사유'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야 분할대상사업의 전체 매출액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E 주식 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주거래처'라 한다)의 2018년도 휴대전화 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분할대상사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기업가치가 감소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이하 주거래처의 2018년도 휴대전화 생산부진을 '제1사정'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8. 5.경 원고로부터 분할대상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I/O 방수커넥터를 E회사 G 시리즈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 E회사 G 시리즈가 생산·판매될 2019년도의 분할대상사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기업가치가 감소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이하 G I/O 방수커넥터의 수주 실패를 '제2사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2018. 7.경 제1, 2사정이 장차 분할대상사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으로 따져보았고, 장차 분할대상사업에 최종매매대금의 10%인 188억 6,750만 원 이상의 가치감소(이하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라 한다)가 있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하여, 2018. 7. 1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이하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로 이미 해제된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8. 7. 25.자 계약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각주6>

다. 피고들의 해제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

제1사정은 단순한 경영실적의 하락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MAE 해제사유로 볼 수 없다. 제2사정은 E의 여러 휴대전화 라인업 중 일부 제품 시리즈 중에서도 한 시즌 제품에 탑재되는 일부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MAE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제1, 2사정이 이 사건 MAE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4호 단서는 이 사건 MAE 해제사유라도 '매도인,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자문사가 매수인 측에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매수인이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은 해제권 행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의 사유를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라 한다).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가까운 장

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피고들이 그 발생가능성을 안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들 또는 그 자문사들에게 제1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은 제1사정의 발생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1사정은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들에게 'E회사 G 방수 I/O 커넥터의 공급이 미정'임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2사정의 발생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2사정도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제1, 2사정이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에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순자산 가치평가방식 혹은 상속세 및 법인세법상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당심 감정인의 감정업무보고서(이하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위 가치평가방식들에 의한 가치감소가 189억 원 이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하여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감소를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그에 관한 당심 감정결과는 부정확한 전제와 수치에 따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제1, 2사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그것이 5.44년 동안 지속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차감 전 순이익의 예상 감소액에 멀티플배수 5.44를 곱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의 효력

가. 제1, 2사정이 이 사건 MAE 해제사유인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1) 제1사정에 관하여

갑 제32호증, 을 제3, 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사정은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AE, MAC 해제조항은 기업인수 등에서 매수인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리스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로 계약 체결일 또는 실사 종료일로부터 거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변화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서 달

리 정함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발생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것들이 MAE, MAC 해제조항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이 해제사유를 위와 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제1조(정의)에 이들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② 기업인수의 실무에서도 '경제상황의 변화'나 '관련 산업 전반의 상황변화'와 같은 것들이 MAE, MAC 해제조항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매도인이 위 사유들을 해제사유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과 같은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그러한 사유로는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인수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한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이후 인수대상 기업의 주된 거래처들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인수대상 기업과 주된 거래처들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결국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기업인수 시 매수인이 회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④ 제1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출하량이 2018년 약 3억 6,700만 대(전년 대비 14.8% 감소), 2019년 약 3억 5,100만 대(전년 대비 4.4% 감소)로 크게 감소하였고, 휴대전화 생산량이 2018년 약 3억 8,100만 대(전년 대비 12.51% 감소), 2019년 약 3억 2,400만 대(전년 대비 14.97% 감소)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인바, <각주7> 주 거래처의 위와 같은 휴대전화 출하량,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사정은 이 사건 MAE 해제사유인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제1사정은 '분할대상사업의 경영실적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출하량,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라는 사정이므로, 제1사정이 분할대상사업의 단순한 경영실적 하락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사정에 관하여

갑 제25, 29호증, 을 제6, 10, 18, 25, 28,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사정도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

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제2사정은 E의 여러 휴대전화 라인업 중 일부 제품 시리즈 중에서도 한 시즌 제품에 탑재되는 일부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H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실사보고서에는, 전자부품사업부의 방수 I/O 커넥터에 관하여 '전자부품사업부 중 휴대전화 부문의 월별 매출은 E, F의 플래그십 모델의 매출 추세에 영향을 받는다', '2016년 1분기에 출시된 E 플래그십 모델인 I과 2017년 1분기에 출시된 J에 원고의 방수 I/O 커넥터가 적용되었다. 방수 I/O 커넥터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반영되어 일반 I/O 커넥터와 비교하여 판매물량은 적으나, 평균판매단가(ASP)가 11.4배 수준으로 크게 높아 매출액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 '2014년 이후 일반 I/O 커넥터 매출이 감소하였고, 기존 매출 대부분이 방수 I/O 커넥터로 대체되는 추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자부품사업부의 매매대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평가 근거자료에 'E에 공급하는 방수 I/O 커넥터의 수요,공급이 오를 것임에 따라 방수 I/O 커넥터의 시장점유율이 2019년도에는 22%, 2020년도에는 25%에 달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③ 위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2017. 5.경 예상과 달리 E에 G 방수 I/O 커넥터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은 분할대상사업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8. 7.경에는 제2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2사정은 이 사건 MAE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장래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제2사정을 이 사건 MAE 해제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 2사정이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인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9호증, 을 제1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원고가 구두로 답변한 내용 및 원고가 외부에 공

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을 해제의 예외사유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 1, 2사정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1, 2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제1, 2사정은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 되고, 피고들이 그 발생가능성을 알았으며,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발생한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은 '매수인이 자료 등을 통해 알았던 사건 등'을 해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상 현존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사건, 사유 또는 사정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어 매수인이 그 발생을 예상하였다면 '매수인이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양해각서 제10조 4. 나항도 양해각서상 MAE 해제 예외사유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개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 규정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은 위 양해각서 조항과 달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고, 결국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대신 원고는 위 '제공받은 자료 등'의 다음에 '(보다 명확히 하면, 매도인,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자문사가 본 계약 체결 이전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및/또는 자회사에 관한 매수인의 회계, 세무, 법률, 영업 등 전반에 대한 실사시의 질의응답 세션 및/또는 경영진 인터뷰에서 매수인 측에게 구두로 답변하거나 공개한 사항을 포함)'을 넣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어떠한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의 적용대상인 '매수인이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은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4항은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은 '매도인, 신설회사 및 자회사의 각 부장 이상의 어느 임직원이 실제로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

④ MAE 해제조항은 매수인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회피의 필요성 때문에 두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업인수 과정에서 장래에 어떤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예상하여 그 위험을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산정 시 반영하였다면, 합의로써 그 사건 등의 발생을 MAE 해제의 예외사유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해제의 예외사유로 정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

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 나오는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량, 판매량 감소 추이, 원고의 주거래처에 대한 의존관계 등을 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교섭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핸드셋 부품업의 최근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5.3% 정도라고 인식하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 1 2면), 원고가 2018. 1. 15.경까지도 전자부품사업부의 2018년 예상 영업이익을 137억 원 정도로 보았다가 5개월만인 2018. 6. 22.경 2018년 예상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58억 원 정도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제1사정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제1사정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였더라도, 이 경우 제1사정은 '매수인이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아니라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이상, 제1사정이 '매수인이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가 피고들에게 G에 원고의 방수 I/O 커넥터가 탑재될 것이라고 확인한 적이 없으나, 원고는 G에 원고의 방수 I/O 커넥터가 탑재될 것임을 전제로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 책정하여 피고들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2018. 3.경 H 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분기별 가격 네고에서 방수 I/O 커넥터의 제시가격이 E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침, K 물량 점진적 축소 예정, G 공급 여부는 미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원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업부에서 격분하네요. 악의적인 침소봉대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G 방수업체 선정은 고객에서 검토 단계

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가 2018. 1. 15.경까지도 전자부품사업부의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 203억 원 정도로 보았다가 5개월만에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42억 원 정도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제2사정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제2사정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이상, 제2사정이 '매수인이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MAE 해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10% 이상 감소했는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정적 사건, 사유 또는 사정과 종합하여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회사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분할대상사업의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개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MAE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제1, 2사정 모두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의 적용대상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 당시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장차 분할대상사업 또는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가 189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2) 가치감소의 판단기준 관련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

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평가

피고들이 1차 인수의향서에서 2017. 6. 30. 기준 12개월 간 차감 전 순이익 297억 원에 멀티플배수 5를 곱한 1,485억 원으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여 원고에게 인수를 제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97억 원과 전자부품사업부의 과거 3년간 차감 전 순이익, 과거 5년간 차감 전 순이익에 멀티플배수 5.4, 5.68을 적용하여 인수대금의 증액을 제안한 사실, 피고들이 2차 인수의향서에서 멀티플배수 5.44를 적용하여 1,615억 원으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여 원고에게 인수를 제안한 사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전자부품사업부의 인수가액이 정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하여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최종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제 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평가

(1)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MAE 해제조항에서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하여 분할대상 사업의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은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회사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명시적으로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하여 장래의 가치감소 여부, 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감소가 예상될 경우, 그 가치감소의 정도를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최종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이후 제1, 2사정의 발생으로 인한 전자부품사업부의 예상 가치감소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② 원고는 순자산 가치평가방식 혹은 상속세 및 법인세법상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 감소의 평가 시 순자산 가치평가방식 혹은 상속세 및 법인세법상 가치평가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전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순자산 가치평가방식 혹은 상속세 및 법인세법상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2차 인수의향서에서 전자부품사업부에 관하여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하여 인수금액을 제시한 후, UC 사업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UC 사업부의 가치평가는 영업 가치로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사업부의 순자산가치의 1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원고가 피고들의 2차 인수의향서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최종매매대금이 결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MAE 해제사유인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의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상 가치감소분에 멀티플배수 5.44를 곱한 금액으로 189억 이상의 가치감소 유무를 판단하기로 합의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계약내용의 해석에서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기업인수에는 상당한 시간과 다액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기업인수가 무산될 경우, 매도인 측은 신용도 하락, 기존 계약관계의 단절,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 측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기업인수의 계약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는 MAE, MAC 해제조항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는 피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원고와 여러 차례 교섭을 한 후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어느 조항에도 피고

들이 주장하는 '멀티플배수' 또는 '5.44'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② 피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1년 동안 35억 원을 감소시키고 이후에는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건 등과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5.44년 동안 매년 35억 원 합계 190억 원 정도 감소시킨 사건 등이 동일한 가치감소를 일으킨 것으로 취급되어 모두 이 사건 MAE 해제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불합리하다.

③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고(전문 제3항),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제1조), 이 사건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제16조 제1항).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3% 초과 10%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조정(감액)하고, 10% 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의하면서(제10조 제4항 등), 조정 금액 산정에 있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평가에 사용된 배수(multiple) 등은 곱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별첨1 제3조 제2항 다].

(3) 따라서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 당시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전자부품사업부의 차감 전 순이익이 189억 원 이상 감소하였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5.44년 동안 189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제1, 2사정은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회사의 가치를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는, 또는 그와 같이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MAE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3) 가치감소의 정도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이 2018. 7.경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장차 전자부품사업부에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차감 전 순이익은 '영업이익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주8>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상각비의 변동이 없는 이상, 영업이익을 189억 원 이상 감소시키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차감 전 순이익도 189억 원 이상 감소되게 된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전자부품사업부의 2017. 6. 기준 12개월 간 차감 전 순이익을

297억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멀티플지수 5.44를 적용하여 1,615억 원으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여기에 UC 사업부 등의 가치평가액을 더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최종매매대금을 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를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5.44년 동안 연간 약 297억 원의 차감 전 순이익 발생'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8. 12. 31. 기준 12개월 간 차감 전 순이익은 약 111억 원(실적기준)이고, 2019. 12. 31. 기준 12개월 간 차감 전 순이익은 약 127억 원(실적기준)인바, 이들과 위 297억 원과의 차액은 2018년 약 186억 원, <각주9> 2019년 약 170억 원<각주10> 합계 약 356억 원<각주11>으로 189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그렇다면 설령 2020. 1. 1. 이후부터 전자부품사업부의 차감 전 순이익이 계속하여 연간 297억 원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전자부품사업부의 차감 전 순수익 가치평가방식에 의한 가치는 실적기준으로도 약 356억 원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2018. 7. 17.자 계약해제 당시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를 예상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차감 전 순이익을 전망한 경우에도 2018년도 약 164억 원, <각주12> 2019년 약 156억 원<각주13> 합계 약 320억 원<각주14>의 가치감소가 합리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제1, 2사정 외에는 전자부품사업부의 차감 전 순이익을 위와 같이 급락시킬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한 바 없었고, 2018, 2019년에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UC 사업부의 순자산가치가 크게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약 356억 원의 차감 전 순이익 감소는 제1, 2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2018. 1. 5.경 피고들에게 분할대상사업의 2018년 예상 영업이익을 약 137억 원 흑자,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 약 203억 원 흑자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6. 22.경 피고들에게 분할대상사업의 2018년 예상 영업이익을 약 58억 원 적자,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 약 42억 원 적자로 변경 제시하였다. 그 차이는 2018년 약 195억 원, <각주15> 2019년 약 245억 원<각주16> 합계 약 440억 원<각주17>에 이른다.

위 2018. 1. 5.경부터 위 2018. 6. 22.경 사이에 제1, 2사정 외에는 전자부품사업부의 예상 영업이익 전망을 위와 같이 급락시킬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한 바 없었다. 원고 스스로 제1, 2사정을 이유로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의 예상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 영업이익보다 약 44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018. 7. 17.자 계약해제 당시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를 예상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위 변경된 예상 영업이익은 설정 목표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감소를 예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원고의 2018년의 영업이익은 약 46억 원 적자, 2019년의 영업이익은 약 31억 원 적자로 집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2018. 6. 22.자 예상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합계 23억 원<각주18>이 된다).

그러나 ㉠ 실제 영업이익에 의하더라도 2018. 1. 5.자 예상 영업이익과는 약 417억 원<각주19>의 차이가 발생하고(위 297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이는 189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실제 영업이익으로 가치감소를 산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189억 원 이상이 되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거래종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제10조 제1항), 이 사건 MAE 해제조항이 '합리적인 예상'만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해제 당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가치감소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면 해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기업인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장래에 가치감소가 확정된 후 이를 실사함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만 해제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예상 영업이익, 재무상태 등 자료들에 기초하여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평가를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가 수정하여 제공한 예상 영업이익 자료로 전자부품사업부의 가치감소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는 점, ㉣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시한 위 변경된 예상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가 피고들의 강요 등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실제 영업이익도 대규모 적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장래 분할대상사업에 189억 원 이상의 가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은 예상 영업이익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영업이익이나 차감 전 순이익의 증가가 장래 가능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해줄 근거나 자료를 피고들에게 제공한 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4. 원고의 2018. 7. 24.자 계약해제의 효력

피고들의 2018. 7. 17.자 계약해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8. 7. 24.자 계약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2018. 7. 24.자 계약해제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합자회사들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합자회사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합자회사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세종(재판장) 김종우 이영창

각주1: LTM의 'Last Twelve Month(지난 12개월)'의 약자이고,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의 약자이다. LTM EBITDA는 기준일 전 12개월 동안의 EBITDA를 의미한다.

각주2: = 커넥터 부문 648억 원 + 안테나 부문 5억 원

각주3: = 커넥터 부문 776억 원 + 안테나 부문 69억 원

각주4: 피고들은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날짜를 2018. 7. 17.로, 그 해제사유를 아래 제1, 2 사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 변경하였다.

각주5: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4항, 제10조 제1항 제7호가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른바 ‘Material Adverse Effect(MAE)’ 또는 ‘Material Adverse Change(MAC)’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6: 피고 D는 예비적으로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합자회사들의 재산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주7: 원고 2022. 8. 18.자 준비서면 29, 30면 참조

각주8: 당심 감정결과 6면 참조

각주9: = 297억 원 - 111억 원[2018. 12. 31. 기준 차감 전 순이익(실적기준)]

각주10: = 297억 원 - 127억 원[2019. 12. 31. 기준 차감 전 순이익(실적기준)]

각주11: = 170억 원 + 186억 원

각주12: = 297억 원 - 133억 원[2018. 12. 31. 기준 차감 전 순이익(전망기준)]

각주13: = 297억 원 - 141억 원[2019. 12. 31. 기준 차감 전 순이익(전망기준)]

각주14: = 164억 원 + 156억 원

각주15: = 137억 원 + 58억 원

각주16: = 203억 원 + 42억 원

각주17: = 195억 원 + 245억 원

각주18: = 58억 원 + 42억 원 - 46억 원 - 31억 원

각주19: = 440억 원 - 23억 원